

제 2022-012 호

“함양군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추진되는 “함양군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에 대하여 경상남도, 함양군과 정부(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5년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합의 하에 작성한 협약 조건과 부속서에 근거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하고 협약서를 교환한다.

1. 경상남도, 함양군이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2. 정부와 경상남도, 함양군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에 따른 재원을 확보한다.

3. 정부는 사업목표에 따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각 단위사업별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를 지속 관리하고 경상남도과 함양군은 성과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조한다.
4. 사업기간 동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2022년 5 월 4 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함양군